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도걸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3402
----------	-------

발의연월일 : 2025. 10. 1.

발의자 : 안도걸 · 임호선 · 정준호

민형배 · 어기구 · 양부남

박균택 · 조인철 · 조계원

손명수 · 박홍배 · 전진숙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투자 진흥지구에 입주한 기업 등에 대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감면하고 있으나, 2025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러나 해당 법률의 유효기간이 2031년까지로 연장되었고, 아시아문화중심도시의 기업 유치 장려 등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과세특례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6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21조의20제1항).

법률 제 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1조의20제1항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31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21조의20(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등) ①</p> <p>「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에 따른 투자진흥지구에 <u>2025년 12월 3</u> <u>1일까지</u> 입주하는 기업이 그 지구에서 사업을 하기 위한 투 자로서 업종 및 투자금액이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 당하는 투자에 대해서는 제2항 및 제4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 정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 를 감면한다.</p> <p>② ~ ⑫ (생 략)</p>	<p>제121조의20(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등) ①</p> <p>-----</p> <p>-----</p> <p>-----<u>2031년 12월 3</u></p> <p><u>1일</u>-----</p> <p>-----</p> <p>-----</p> <p>-----</p> <p>-----</p> <p>-----</p> <p>-----</p> <p>-----</p> <p>-----.</p> <p>② ~ ⑫ (현행과 같음)</p>